

퇴직연금 거래신청서(개인형IRP)

본인확인	판매직원	담당	책임자

※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전 산 인 자 란

1. 기본정보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해피콜 방식	☐ 전화(휴대폰) ☐ 온라인(모바일 웹) ※ 일정횟수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 신청구분

신청 용도	☐ 퇴직금융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		
	☐ 퇴직금융+ 적립용	가입 자격	[필수] 선택하신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제외). ☐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자영업자	
		가입 한도	* 전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확인사항] ①세금우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 금우대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연금계좌 계약금액/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금융기 관 정보를 조회합니다. 연간납입한도 자 필 기 재 원	
할인 대상 정보(증빙첨부)		☐ 장애인 등록증 소지 고객 ☐ 장기할인(타사HRP이전시, 타사HRP가입일 :)		

3. 통지수신

아래에서 선택하신 통지 외 법적통지[가입자 교육자료 발송, 디폴트옵션 적용 관련 안내, 법령에 의한 상품매매 불능 또는 위험자산 한도초과, 운용현황보고서(분기별) 등]은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우편, 알림톡(LMS), 이메일 등으로 발송됩니다.
당행 고객정보를 통하여 발송하므로 반드시 고객정보 상의 통지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통지방법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만기도래 시 전월 통지 발송	☐ 이메일 ☐ 알림톡(LMS)
서비스 통지 제외 요청	입금예정상품 또는 보유상품 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 관련 안내 등 이메일 또는 알림톡(LMS)로 발송되는 기타 알림 통지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발송제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통지 발송제외 신청 ☐ 신청(미발송) ☐ 신청안함(발송)
약관 변경 통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통지	☐ 알림톡(LMS) ☐ 이메일 ☐ 수신거부

4. 투자권유희망 여부(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지정시 투자권유희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를 희망함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상품 가입 불가(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초저위험”만 가능) [가입자 자필기재 : 아래 내용에 대해 설 명 을 듣 고 이 해 하 였 음]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상단에 확인 내용을 자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으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의 별도의 의사가 있기 전까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별도의 개별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아래의 상품 중 1개만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1개)	상품명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상품구성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2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BF 3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5%)+집합투자증권(75%)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0%)+집합투자증권(8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3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5%)+집합투자증권(75%)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40%)+집합투자증권(6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50%)+집합투자증권(5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초저위험(5등급)	원리금보장상품(100%)

6. [선택] 입금예정상품 운용지시(부담금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운용 상품 지정)

입금예정상품 미등록 시, 최초 입금된 적립금은 입금 다음 영업일 통지 후 2주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이후 입금되는 추가 적립금은 별도 통지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구분	상품명	매수비율(%)
기업 부담금 (퇴직금)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기업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개인 부담금	☐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기업부담금(퇴직금)과 동일한 운용지시(체크 후 아래 작성 생략)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개인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 위의 상품 개수 초과 시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별지]”에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소비자 구분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대리인의 경우 “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매수하는 상품별 해당 금융소비자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의 상품 매수시 해당 소비자구분 모두 체크).

예금성 상품 (정기예금, 디폴트옵션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문금융소비자	☐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성년자 ☐ 전문금융소비자이나 상품설명을 희망
보험성 상품(GIC)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집합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 등)	일반금융소비자	☐ 일반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일반투자자 선택)
	전문금융소비자	☐ 전문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전문투자자 선택)

1) 설명의무 이행 확인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기재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발생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 듣고 이해함]



2) 계약서류 제공 의무: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일체를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추후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수령방법	약관 및 상품설명서	☐ 서면 수령 ☐ 이메일 ☐ 알림톡(발송실패시 LMS 발송)
	계약서	‘퇴직연금 거래신청서(개인형IRP)’ 사본 수령

* 계약서: 퇴직연금 거래신청서(개인형IRP) 사본

** 약관: 개별상품 약관 *** 상품설명서: 개별 상품(투자)설명서 및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이율보증형보험/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가입자 자필기재: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함**]

8. 고객 유의사항

디폴트옵션 유의사항 확인	- DC/IRP에 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을 납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만기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알림톡,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DM으로 발송됩니다. - 적립금 납입일 또는 상품 만기도래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시점까지 만기 자금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주(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입금한 경우 2주)간의 대기기간동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점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은행은 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 번 입금한 경우에도 최초 입금 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입금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였으나, 납입 주기로 인하여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는 만기 도래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내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경우 내 구성 상품의 비중대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예금이 포함된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상품의 매매신청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부담금이 입금된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매당 시점 금리를 확인하시려면 pension.hanabank.com에 사업자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기예금: 다음 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 ELB 등)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유의사항 확인	- 퇴직연금(DC, 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 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顺延됩니다. - 퇴직연금 감축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TF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상품 매매 신청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 (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상품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영업일에 가능하나, ETF 외 상품을 매수하려면 D+4영업일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본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안내	■ 수수료 납입 안내: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상 명시된 수수료를 참조)에 의거 매년 계약유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퇴직연금 구속행위 제한(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 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이 제한되며, 여신 실행 1개월 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내의 제공 상품은 개별 상품 제공기관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상품 도입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1599-1111, 1588-1111), 상품별 제공 금융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은행의 개인형IRP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 및 고객 유의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자필기재: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으며, [가입자 자필기재: **수령**] 하였기에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개인형IRP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거쳐 제공됩니다.

